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5.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천원)

안전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출연금액
계			3,629,309
101	영등포구장학재단 출연금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324,000
102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공연예술 진흥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3,288,600
10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제개편 등 연구	16,70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¹⁾의 개정(2016 회계 연도 시행)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것으로,
- 영등포장학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총 36억여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참고로, “법” 개정취지는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 하려는데 있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출연금액은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년월일 : 2015.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6,709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다. 사업내용

-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운영
- 지방세무 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사업

라.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그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

마. 출연금액(소요예산)

- 범 위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액 : 16,709천원
- 산출기초 :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1,389,374천원의 1만분의 1.5
- ※ 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 세부 출연금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 가. 1만분의 1.5
 -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